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90,506,991	11,715,210
일반회계	368,313,103	11,049,393
특별회계	22,193,888	665,817
기타특별회계	22,193,888	665,817
상수도특별회계	8,479,547	254,386
자활기금특별회계	905,815	27,17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19,504	27,585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6,405,461	192,164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69,542	2,086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	341,192	10,236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5,072,827	152,18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9,969,316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7억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 (2)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3) 재해대책 및 복구비
- (4) 동일부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